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23 선고 2024가단10524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3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, B, C, D, A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66㎡ 지상 벽돌블럭구조 건축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- 적용법조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